※ 본 자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위한 것입니다.

신한은행

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,

퇴직연금 가입자교육

확정기여형(DC) / 기업형IRP / 개인형IRP

1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특징

▪ 확정급여형(DB) 제도

퇴직급여가 퇴직시점의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제도로써 퇴직연금 자산은 사용자(기업)가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퇴직금을 수령합니다.

▪ 확정기여형(DC) 제도

퇴직급여가 근로자별 퇴직연금의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로써 기업은 매년 근로자를 위한 부담금을 납부합니다. 적립금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.

※ 사용자(기업)의 부담금 : 매년 연간 임금총액 × 1/12

▪ 기업형IRP 제도

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이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급여제도 도입으로 인정합니다.

▪ 개인형IRP 제도

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노후에 활용하기 위해 적립하여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.

▪ 퇴직연금제도 종류별 세부 특징

구분	확정급여형 DB	확정기여형 DC	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	
			기업형 IRP	개인형 IRP
급여종류	퇴직소득을 개인형IRP로 과세이연 또는 일시금			연금 또는 일시금
수급요건	퇴 직 시			연금:만55세이상및연금수령 기간5년이상 일시금:제한없음
급여액	직전 3개월 평균임금X 근속기간 (퇴직금제도와 동일)	매년임금총액X1/12 ±운용수익		퇴직급여 이전 금액± 운용수익
적립금 운용주체	기 업	가 입 자		
개인 추가납입	불 가	가 능 (연금저축 등 연금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1,800만원 한도)		
중도인출	불 가	가 능 (법정사유 충족시)		

- 개인 추가납입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 가능 (단, 연금저축 합산한도는 최대600만원)
- 1주택 고령가구(부부 中 1인, 60세 이상)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 분은 추가납입 허용(1억원한도*)/ 1주택 기초연금수급자(부부 합산 1주택 이하)가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차액분은 추가납입 허용(1억원한도*)
 *단, 두 양도차액 합산하여 1억원 이하까지만 추가납입 가능
- ISA 만기금액을 만기일로부터 60일 내 연금계좌로 전환 시, 전환금액의 10%(최대 300만원 한도)에 대해서 추가로 세액공제 가능
-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적립된 자산은 근로자(가입자)의 지시대로 운용되며 퇴직시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운용성과에 따라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.
-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은 법령상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해당.

2 사용자 부담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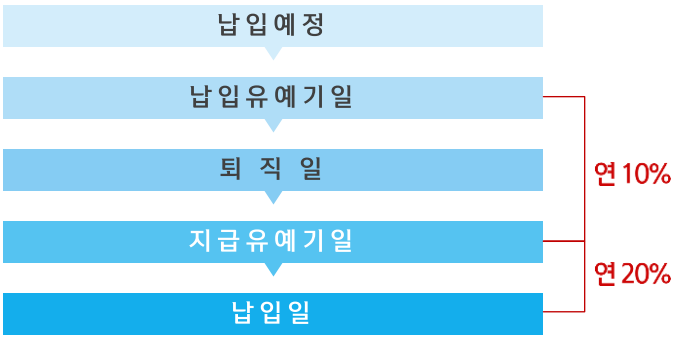
▪ 부담금 수준

조기 퇴직과 잦은 이직이 일반화되어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줄고, 일하는 기간보다 노후 기간이 더 길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.

부담금 수준	연간 임금 총액의 1/12 이상
부담금 납입시기	연간 1회 이상,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
부담금 납입상황	퇴직연금사업자의 퇴직연금 사이트에서 조회

▪ 부담금 납입지연

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기업형 IRP를 도입한 사업장은 퇴직연금 규약 및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. 만약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일에 따라 법이 정하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.



※ 납기유예기일 : 연장된 납입기일로 퇴직연금 규약의 정함에 따름

※ 지급유예기일 : 연장된 지급기일로 퇴직연금 규약의 정함에 따름,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

지연이자 적용제외사유

첫째,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재정법」, 「지방자치법」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

둘째,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산선고,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,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도산 등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해당된다.

셋째,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(存否)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넷째, 그 밖에 앞의 세 가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개인 추가자금 납입 및 세액공제효과

퇴직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연금자산 마련을 위해 가입자 개인 추가자금을 확정기여형 , 기업형IRP,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.

연간 900만원 ×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 한도 내 세액공제
IRP + DC + 연금저축 통합하여 연간 900만원
단, 연금저축은 최대600만원

- 총 급여액(종합소득금액) 기준 5,500만원(4,500만원) 이하16.5% 세액공제, 초과13.2%세액공제 가능.
- ISA 만기금액을 만기일로부터 60일 내 연금계좌로 전환 시, 전환금액의 10%(최대 300만원 한도)에 대해서 추가로 세액공제 가능.

개인 추가자금 납입 및 세액공제효과

연간 1,800만원(연금저축상품, DC/기업형IRP/개인형IRP의 가입자부담금 합산)

① 1주택 고령가구(부부 中 1인. 60세 이상) 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차액분은 추가납입 허용(1억원한도*)

② 1주택 기초연금수급자(부부 합산 1주택 이하)가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차액분은 추가납입 허용(1억원한도*)

*단, ①, ②합산하여 1억원 이하까지만 추가납입 가능



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,

퇴직연금 가입자교육

확정기여형(DC) / 기업형IRP / 개인형IRP

세액공제 효과 예시

구분	IRP 900만원 납입시 세액공제효과	
대상	종합소득 45백만원 이하 또는 급여소득만 있는 경우 55백만원 이하	종합소득 45백만원 초과 또는 급여소득만 있는 경우 55백만원 초과
공제세율	16.5%	13.2%
공제액	148.5만원	118.8만원

3 임금 및 퇴직급여

▪ 확정기여형 및 기업형IRP의 퇴직급여

$$\text{퇴직급여} = \text{매년 연간 임금총액} \times \frac{1}{12} \pm \text{운용수익}$$

▪ 임 금

사용자가 '근로의 대가'로 근로자에게 임금, 봉급,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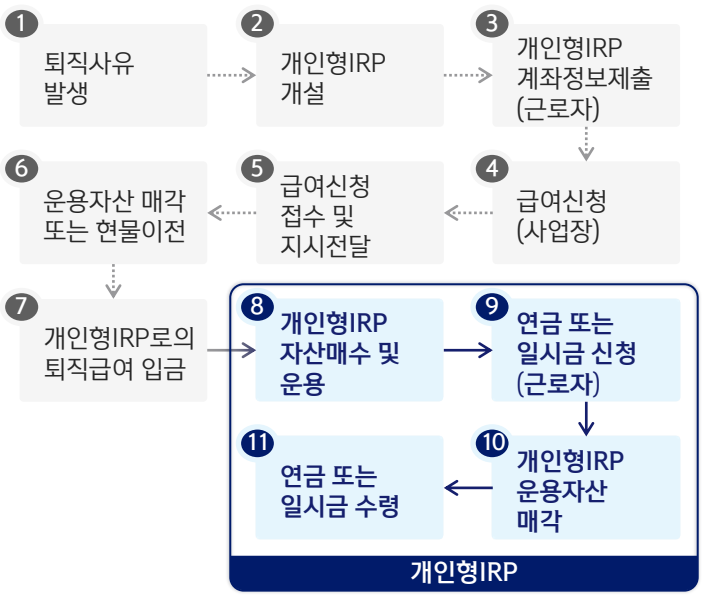
+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
정기적,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고정적인 상여금 등

-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
일시적,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등

※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정해져 있는지,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는지,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 및 지급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

4 퇴직급여 지급 및 개인형IRP로의 이전절차

-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시, 개인형IRP로의 이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
- DC 가입자는 동일한 금융기관의 IRP로 현물이전* 가능합니다.
 * 현물이전 : DC제도에서 운용하던 상품을 매각(현금화)하지 않고 상품 그대로 개인형IRP에 지급하는 형태
- 이전된 퇴직급여는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

참조 : 개인형IRP로의 의무이전 예외사유

-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
- 가입자가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(단,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 한도 내)
- 퇴직급여액이 법령에서 정한 금액(300만원) 이하인 경우

▪ 퇴직연금제도 종류별 세부 특징

급여종류	형 태	수급요건
연 금	확정급여형, 확정기여형, 기업형IRP 주1)	▪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이상 ▪ 연금지급기간은 5년이상
	개인형IRP	▪ 55세 이상 ▪ 연금지급기간은 5년이상
일시금	모든 형태	▪ 연금수급 요건이 안되거나,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

주1) 확정급여형, 확정기여형, 기업형IRP의 경우 퇴직시 개인형IRP로 의무이전 해야하므로 실질적인 연금의 지급은 개인형IRP에서 이루어 짐.

▪ 개인형IRP로의 이전시 효과

1. 과세이연 효과
 퇴직급여가 개인형IRP로 이전되면 해지 또는 연금수령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됨
2. 연금수령 가능
 연금수령조건(만55세) 충족시, 연금으로 수령가능

▪ 개인형IRP로의 이전 후 적립금 운용방법 및 상품

개인형IRP에 납입된 퇴직급여 및 개인추가납입금으로 정기예금, 수익증권(펀드)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.
운용상품 및 투자비율은 가입자가 직접 결정하며 그 운용결과는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. 운용상품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는 개인형 IRP를 가입한 금융기관과의 상담 등을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.

5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 옵션)

▪ 사전지정운용제도란?

확정기여형퇴직연금(DC), 기업형IRP 또는 개인형IRP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, 가입자가 사전에 선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입니다. 퇴직연금 적립금이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여 운용성과를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.

▪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

DC/IRP 퇴직연금 운용상품 중 원리금상품 등의 만기가 되는 경우, 6주 동안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(동의)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됩니다. (운용지시 없이 신규한 퇴직연금 제도의 적립금이 2주 경과 시 포함)

▪ 상품 안내

신한은행이 고객님께 제시하는 디폴트옵션상품은 총 7가지 상품이며 고객님께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 3의 제2항에 따라 한 가지 상품을 선정하셔야 합니다..
(QR코드를 이용하시면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.)

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,

퇴직연금 가입자교육

확정기여형(DC) / 기업형IRP / 개인형IRP

6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

▪ DC/IRP 퇴직급여

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나 아래 법령상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. 단, ⑥와 ⑦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담보제공만 가능하고, ⑨의 경우에는 중도인출만 가능합니다.

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가능 요건(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)

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

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전세금(보증금)을 부담하는 경우(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)

③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, 가입자의 배우자,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의 부양가족(「소득세법」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)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(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18조의5제1항및제2항에 따른 의료비)를 부담하는 경우 (단, DC/기업형IRP의 경우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만 가능)

④ 담보를 제공하는 날(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신청일)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
⑤ 담보를 제공하는 날(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신청일)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

⑥ 가입자가 가입자, 가입자의 배우자,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(「소득세법」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)의 대학등록금,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

⑦ 사업자의 휴업 실시로 가입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

⑧ 재난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합니다)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

⑨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(단, DC인 경우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합니다.)

7 연금계좌이체

▪ 이체를 위한 요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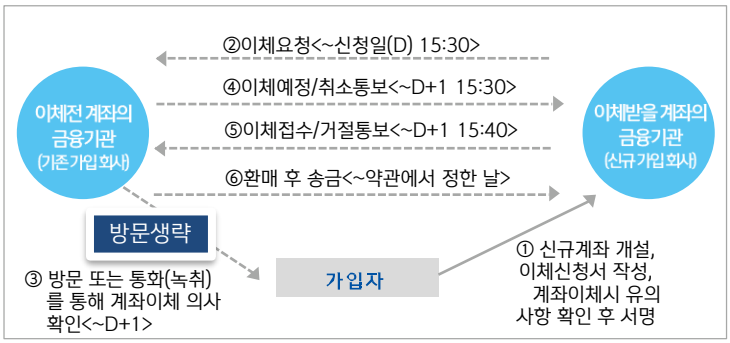
가입자의 연령이 만 55세를 경과하고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경우 (연금수령 조건을 충족한 경우)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IRP간 이체가 가능합니다. (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4)

※개인형 IRP간 이체는 별도의 요건 없이 이체가 가능합니다.

▪ 이체에 따른 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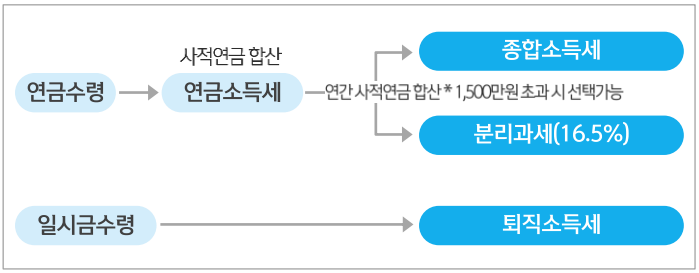
연금저축과 개인형IRP간 이체 시 인출로 보지 않음으로 이체 시 과세되지 않고 이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.

▪ 이체방법 및 절차



8 연금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과세체계

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경우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,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.



* 퇴직소득을 원천으로 연금수령시는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

참고 : IRP 인출시 세제

<연금수령시>

※ 소득원천별 인출 순서 : ①→②→③

소득원천	적용세제
①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가입자부담금 원금	과세제외
② 이연퇴직소득	퇴직소득세율 × 70%(분리과세)주1)
③세액공제 받은 가입자부담금 및 운용수익	연금소득세 3.3~5.5%원천징수주2) : 연간 사적연금(연금저축+IRP) 소득 15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혹은 분리과세(16.5%) 선택 가능.

<일시금수령시>

소득원천	적용세제	
	일반해지시	법정사유시주3)
세액공제 받지 않은 가입자부담금 원금	과세제외	
이연퇴직소득	퇴직소득세 (분류과세)	연금소득세 (퇴직소득세율×70%주1), 분리과세)
세액공제 받은 가입자부담금 및 운용수익	기타소득세16.5% (분리과세)	연금소득세 3.3~5.5%주2) (분리과세)

주1) 실제 연금수령연차 10년 초과 20년 이하 60%, 20년 초과 50%

주2) 만 연령별 원천징수세율 : 80세 이상 3.3%, 70대 4.4%, 그 외 5.5%

주3) 법정 부득이한 사유(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)

① 천재지변 ② 사망/해외이주 ③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

④ 파산선고/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⑤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등

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,

퇴직연금 가입자교육

확정기여형(DC) / 기업형IRP / 개인형IRP

9 퇴직연금제도의 폐지·중단시 처리

▪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

노사합의로 퇴직연금제도 폐지

고용노동부장관의 중단명령 등

제도 폐지

-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(개인형IRP로 이전)
-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

▪ 퇴직연금제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

일시적인 재정압박으로
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

사업자가 등록 취소 된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
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하도록 명령을 내린 경우

제도 중단

-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납입, 급여지급, 적립금 운용, 적립금 운용 현황 통지 및 가입자 교육 등은 계속 수행

▪ 퇴직금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기간에 대한 처리

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이후 및 중단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8조 제 1항에 의거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며 사용자(기업)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제도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

▪ 폐업기업 『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』

폐업한 퇴직연금 가입 업체의 퇴직연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.
*준비서류 :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
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(근로자용) 중 택 1

▪ 퇴직연금사업자가 폐업 등 도산사실을 인지한 경우

개별가입자에게 서면 등을 통하여 추가로 안내합니다.

10 안정적인 투자원칙

▪ 장기투자

수익률의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하더라도 투자기간이 길수록 수익률의 변동성은 감소하므로 장기투자를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합니다. 퇴직연금은 법령상 사유를 제외하고 중도인출을 할 수 없어 자연스럽게 장기투자가 이루어지며 이에 복리효과까지 더해져 투자기간이 길수록 적립금은 체증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.

▪ 정액분할투자

실적배당형상품에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투자하면 가격이 낮을 때 많이 매입하고, 가격이 오를 때 적게 매입하게 되어 평균매입단가가 낮아지는 효과(Cost Average Effect)가 발생합니다.

▪ 분산투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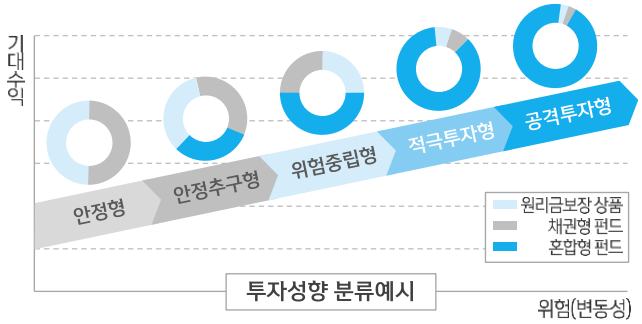
특성이 다른 여러 상품에 적절하게 투자함으로써 투자위험(변동성)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지속적으로 최고의 수익률을 올릴수 있는 투자상품은 없으므로 퇴직연금 상품 중 자신의 투자성향과 목표에 맞는 상품들을 적절하게 조합해야 합니다.

11 적립금 운용방법별 위험과 수익

투자는 기대수익률이 높을수록 위험(변동성)이 커지며, 기대수익률이 낮을수록 위험(변동성)이 작아집니다.

▪ 투자성향에 따른 자산배분

본인이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미리 정하고(투자성향 파악), 그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여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

▪ 운용방법별 수익구조와 투자위험

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용자산은 원금과 이자가 확정된 '원리금 보장상품'과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'실적배당상품'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 '실적배당상품'은 '원리금보장상품' 보다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.

<원리금 보장상품>
- 은행 : 정기예금
- 증권 : ELB(파생결합사채)
- 보험 : GIC(이율보증형 보험)

<실적 배당상품>
- 채권형 펀드 (채권 100%)
- 혼합형 펀드 (주식비중 40% 이하)
- 주식형 펀드 (주식비중 60% 이상)

▪ 비용

가입자가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지시하는 경우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자산에서 매일 차감되는 운용보수, 판매보수, 수탁보수, 사무관리보수 등이 있고 일회성으로 부과되는 환매수수료가 있습니다.
(기타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사업자 홈페이지의 상품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)

▪ 집합투자증권 등의 매도기준가

일반적으로 국내 채권혼합형이나 채권형 펀드의 매도접수시, 매도주문일로부터 3영업일(D+2)의 기준가가 적용됩니다.
다만, 펀드별로 기준가 적용일은 상이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퇴직연금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있는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,

퇴직연금 가입자교육

확정기여형(DC) / 기업형IRP / 개인형IRP

12 자산·부채관리

인생의 각 단계별 상황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재무 사건들을 미리 예상하고 계획 하고 조절하는 자산, 부채관리가 필요합니다.

20~30대 자산준비기
결혼, 주택마련, 종자돈 마련 및 본격적인 자산관리

40~50대 자산 성숙기
자녀 학자금, 자산축적, 노후대비

60대 ~ 은퇴기
은퇴 후 노후생활

사전계획 / 목표설정

재무설계

▪ 평균적 생애설계시 고려사항

① 우리사회는 고령화, 저성장, 저금리 시대에 직면

②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시까지 5~10년의 소득공백 발생
▶ 자녀교육비, 결혼자금, 부모부양비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

③ 목표자금을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노후설계 필요
(은퇴시 필요자금과 준비자금의 은퇴시점 가치가 일치하도록 투자)

▪ 노후 필요자금 산출

① 기본 정보 정리
배우자, 자녀현황 / 각각의 목표정리 / 자산현황 등

② 필요자금분석
목표를 이루기 위한 필요자금분석

③ 준비자금분석
목표 실현을 위해 현재 준비된 자금파악 및 확보 계획

④ 부족 / 잉여 자금분석
차이분석(준비자금 - 필요자금)

⑤ 평가 / 대안마련
부족분에 대한 대책마련

▪ 노후 필요자금 산출 예시

① 기본 정보 정리
노후 필요자금 산출을 위하여 현재의 가족현황과 재무상태 그리고 향후 계획을 미리 상세히 파악해 봅니다.

가족현황	연 령	월 수입
남 편	38세	300만원
아 내	34세	260만원
자녀(남)	7세	-

<재무상태>

자 산	금 액 (만원)	부 채	금 액 (만원)
현금자산	1,300	주택담보대출	3,000
은퇴자산 (국민연금, 개인연금)	1,600	자동차 할부금	1,900
부동산 및 자동차	28,000	**부채 총액**	4,900
자산총액	30,900	순자산 (자산총액 – 부채총액)	26,000

<향후계획>

항 목	시 점
주택확장	5년 후
자녀교육비(대학교)	12년 후
노후자금	22년 후

② 필요자금분석
설정해 놓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가 필요한지 산정해 봅시다.
구체적인 목표별로 필요 예상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며, 필요예상금액의 현재 가치도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.

항 목	시 점	예상금액	예상금액 (현재가치)
주택확장	5년 후	11,800만원	1억
자녀교육비 (대학교)	12년 후	7,500만원	5,000만원
노후자금	22년 후	127,800만원	6억

③ 준비자금분석
현재 보유 중인 자산 중 특정한 재무목표를 위해 미리 용도를 정해 놓은 자금을 먼저 할당한 뒤,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자산을 배분합니다.
노후설계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금에 꼬리표를 달 듯 목표를 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.

<향후계획>

항 목	금 액	예상금액(현재가치)
대출상환	3,000만원	월 60만원씩 4년간 대출상환
주택확장	11,800만원	월 100만원씩 5년 적립식펀드 (목표수익률 9%)
자녀교육비	7,500만원	월 40만원씩 정기적금
노후자금	127,800만원	연금보험 월 20만원 (국민연금+개인연금)

④ 부족/잉여 자금분석
계산된 준비자금에서 필요자금을 빼 봅니다.
전체의 과부족도 중요하지만 각 재무 목표별로 과부족을 계산해 보고 필요 하다면 목표별 자금 재배분도 수행합니다.

⑤ 평가/대안마련
부족/잉여 자금분석 후, 자신의 노후 필요자금 준비현황에 대하여 평가합니다.

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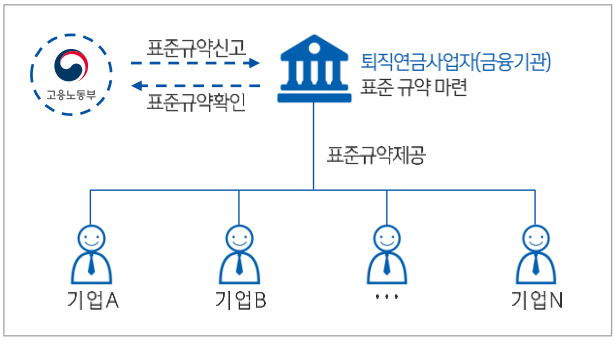
퇴직연금 가입자교육

확정기여형(DC) / 기업형IRP / 개인형IRP

13 표준형DC 제도

▪ 표준형DC 제도

표준형DC제도는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, 둘 이상의 사용자가 하나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형태로, 퇴직연금사업자가 마련한 표준 규약에 중소규모의 기업들이 가입함으로써 가입절차 및 제도운용이 편리 합니다.



표준형 규약에 규정될 사항

1. 표준규약으로 설정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특성과 이를 반영한 명칭
2. 가입 대상 사업의 범위 또는 특성에 관한 사항
3. 적립금 운용방법 및 그 선정기준. 이 경우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의 운용방법 및 그 선정기준을 포함한다.
4. 탈퇴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
5. 수수료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표준형 계약에 규정될 사항

1. 법 제23조 제1호에 따른 표준규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
2.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 산출 및 부담에 관한 사항
3.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계약 해지·변경의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가입자의 수급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▪ 급여지급 및 계약이전 지연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

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 계약서 개정에 따라 계약이전 시 이전절차가 지연될 경우 지연일수만큼 지연보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.

퇴직연금 사업자는 계약이전을 신청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. 다만,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합니다.

이를 지연할 시 운용지시 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보상금을 금전으로 지급합니다.

지연보상금은 정상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 처리된 일 수만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 단위 복리로 계산 후 고객에게 금전으로 지급하게 됩니다.(14일 이내 연10%, 14일 초과 연20% 적용) 단,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"정상처리 시 지급액 " 이 "실제 지급액 " 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.

▪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업중단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

(은행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사용자 손실보상)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. 단, 손실보상 시 다른 사용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.

① 은행이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

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

〈가입자 보호조치의 내용〉
- 사용자와 가입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등록말소 사실과 가입자 보호조치 내용의 통지와 계약의 해지 및 변경에 따른 사용자 및 가입자의 금전적 손실의 보상
- 법 제27조5항에 따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금을 이전하고, 해당사업과 가입자의 퇴직연금제도를 계속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
-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끼칠 수 있는 불합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

퇴직연금 관련 사이트 안내
- 신한은행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센터 http://pensionedu.shinhan.com
- 신한은행 퇴직연금센터 http://pension.shinhan.com

퇴직연금 고객상담센터
1577-4114

14 기 타

▪ 타행에서 개인형IRP 자기부담금 납입 방법

① 타행입금전용 계좌 확인 후 입금
슈퍼SOL > 나의 퇴직연금 > 계좌관리 > 타행입금전용계좌 확인

▪ 계약이전 처리 절차

① 퇴직연금 규약변경 ----▶ ② 관할 노동청에 신고
③ 신규 퇴직연금 계약 체결 ----▶ ④ 계약이전 신청
⑤ 적립금 이전 ----▶ ⑥ 적립금 운용

나만의 퇴직연금 자세히 보러 가기
「슈퍼SOL 나의 퇴직연금」

더 많은 연금정보 보러 가기
「슈퍼SOL 퇴직연금 지식더하기」